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03

제출년월일 : 2025. 8. 12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‘2027년 ~ 203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’, ‘보행환경 기본계획’, 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’ 수립 및 시행 등 처리를 위해 “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”의 존속기한 연장

○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‘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를 따르도록 보완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(안 제5조).

나.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‘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를 따르도록 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라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4】

마. 사전예고(결과) : 【붙임 5】(자체 검토의견 반영)

○ 입법예고 : 2025. 6. 4. ~ 2025. 6. 24. (20일간)

바. 기타 참고사항

1) 현행조례 : 【붙임 6】

2) 방침결정문 : : 【붙임 7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철도경제자유과
입안자	철도경제자유과장	유 재 원
	자전거팀장	김 소 영
	담 당 자 (연 락 처)	정 기 영 (481-2495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30년 12월 31일 ----------.
제9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	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